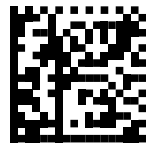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 실업 보험 부
문



999999

과다지급액 결정

SUSAN DOE
888 NORTH 10TH STREET
SILER CITY, NC 27344

우송일: 9999 년 9 월 99 일

청구인 ID: XXXXXXXXX

과다지급액 개정 결정

쟁점 번호: <쟁점 번호>
날짜: 날짜
SSN:XXX-XX-XXXX
항소 만료일: <항소 만료일>

고용보장국(DES)은 귀하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검토를 토대로 <MM/DD/YYYY> 일자의 결정에 포함된 과다지급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본 개정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신고 불이행:
[귀하가 직장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BAI 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LLC 를 보관합니다.

[사무 착오]
[이전 결정에 표시되는 사무 착오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 <과다지급액>	본 결정에 따른 과다지급액
\$ <이전 잔액>	이전 과다지급 잔액
\$ <상환>	본 결정 이전 상환액
\$ <과태료>	과태료 액수
\$ <OVER PAY BAL>	과다지급 잔액

과다지급 잔액은 N.C. Gen. Stat. \$ 96-18(g)(2)에 따라 DES 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은 동국 웹사이트 des.nc.gov에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 로 결제하거나 아래 부서에 수표나 우편환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고용 안전부

각 수표 또는 우편환에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입력한 후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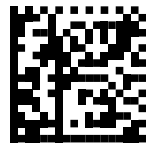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상무부 고용 안정 실업 보험 부
문

정보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UI 사기 방지에 도움을 주십시오.

NC BI 514 ADO

999999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Unemployment Insurance



999999

BENEFITS INTEGRITY SECTION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ORTH CAROLINA 27611

귀하의 과다지급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DES 와 지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불 계약에 대한 지원은 동 국의 급여성실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 본 결정은 상기 항소권 만료일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본 결정의 항소에 대한 정보는 동봉되는 팸플릿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North Carolina 고용보장법 제 96 장에 따라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주장, 급여를 취득 또는 인상하기 위해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태료가 귀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무 연방 과태료

N.C. Gen. Stat. § 96-18(h)에 따라 사기성 과다지급의 결정은 과다지급액의 1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형사 소추:

N.C. Gen. Stat. § 96-18(a)(2)에 따라 각 허위진술, 허위주장, 또는 급여를 취득 또는 인상하기 위한 중대한 사실의 공개 불이행은 급여 가액이 4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죄를 구성합니다. 본 위반행위는 벌금 및/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액이 400 달러 미만일 경우, 위반행위는 N.C. Gen. Stat. § 96-18(a)(3)에 따라 경범죄를 구성합니다.

North Carolina 주 고용 해지

N.C. Gen. Stat. § 143-553(a)에 따라 North Carolina 주 또는 특정 지방 교육 기관의 직원, 무급직 공무원 또는 의원은 고용 지속 조건으로 동 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동 국은 서면 의무 통지를 제공합니다. 합리적 기간 이후 채무가 완납되지 않거나 월 상환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 또는 사법 구제를 추진하지 않는 한 주 정부와의 고용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과다지급액의 회수

N.C. Gen. Stat. § 96-18(g)(3)에 따라 동 국은 아래 절차를 이용하여 과다지급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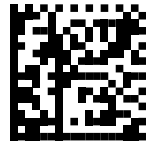
동 국은 연방 세금 환급, 주세 환급, 복권 당첨금 또는 급여 압류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계

과다지급액은 향후 귀하에 지불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다지급액이 변제되거나 귀하의 권리가 소진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주 급여액 중 최대 100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Unemployment Insurance



999999

과다지급액은 동 국 명의의 민사소송으로 추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됩니다.

재산 유치권

통지 이후 30 일 안에 과다지급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동 국은 귀하가 거주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카운티 법원 서기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귀하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판결은 소송사건표에 기재됩니다.

본 감사에 포함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종료일	신고 소득	고용주 신고 소득	고용주 이름 또는 사유	지불 급여	실제 지불 예정 급여	과다지급액
01/01/2001	\$0.00	\$0.00	employersName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